

WTO 뉴라운드의 예상 쟁점과 동향(Ⅱ)

본고는 지난해 연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간행된 임업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연구” 중에서 금후 쟁점으로 예상이 되는 관세분야와 보조금 분야만을 발췌하여 전호에 이어 두번째 연재하는 것임

- 편집자 -

<전호에서 계속>

2. 보조금 분야의 쟁점과 동향

보조금이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은 각 국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해당산업의 구조나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자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WTO에서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 의해 보조금 분야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임업보조금 일부에 대하여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뉴 라운드 보조금 분야의 협상에 대비하여 「보조금 협정」의 규정에 준거하여 현행 임업보조금의 성격과 유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 임업보조금의 지원 실태와 유형 분류

(1)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

이 사업은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 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림경영 장비를 구입하는데 대한 융자지원으로 지원 비율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지원은 지원 대상자를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특정성 (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된다.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산림경영장비 지원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우선 순위가 ① 독립가 ② 임업후계자 ③ 산림경영자 ④ 일반 소재산주 등으로 규정되어 “특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 지원’과 종복되는 보조이므로 WTO에 통보의무가 있는 ‘상계조치 가능보조’로 재분류해야 할 것이다.

(2) 임업기계장비 센터 설치

이 사업은 영세한 산주들이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임업기계를 구입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장비를 대여·수리해 줄 수 있는 임업기계장비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산림조합중앙회이고 지원 내용은 임업기계장비의 구입이며 전액 보조이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어 사

회적인 간접자본(SOC)으로 볼 수 있는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기계와 장비를 대여하거나 수리해 주는 사업이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보의무가 없다. 향후 예산 항목 분류시 보조나 지원이 아닌 일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바꾸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3) 영림계획

이 사업은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데 대한 비용을 국고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전액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사회간접자본인 산림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통보의무가 없다.

(4) 사유림 협업경영

이 사업은 산림경영이 힘든 10 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산주들에게 협업경영을 통하여 임지를 규모화하여 산림 경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금지원 대상자는 산림조합과 협업체 회원으로 지원조건은 국고에서 사업비를 80% 내지 100% 지원하거나, 국고와 지방비, 자부담을 각각 30%, 30%, 40%의 비율로 지원한다.

이 항목은 실제 내용상 WTO 농업협정상 부속서 2에 허용보조(Green Box)로 명시된 '지도 및 자문'이나 '유통 및 판매촉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가

없는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에 해당된다.

(5) 임도시설

임도시설사업은 조림·육림·벌채·병해충 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 교통개선 및 농산촌 지역 개발을 위하여 산림 내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고보조 임도는 시·군 임도 설치 계획에 반영된 노선이 통과되는 산림이고 용자 임도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임도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고 용자 임도는 국고 용자 100%이다.

이 사업은 도로 자체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건설이므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민유 임도 건설 지원' 사업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하여 통보의무가 없다.

(6)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국고 70%, 지방비 30%이다. 이 사업은 지원 내용이나 성격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므로 통보의무가 없는 항목이다.

(7)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이 사업은 표고, 밤, 대추, 야생화, 산채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다양하며 대체로 보조와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의 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정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WTO 농업협정상 부속서 2에 따른 허용보조(Green Box)에 포함된 '유통 및 판매 촉진' 보조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조금 협정」에 규정된 통보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8)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이 사업은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에 대한 지원이고, 지원 대상자는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이며, 지원비율은 국고융자 70%, 자부담 30%이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해 통보의무가 있는 보조금으로 분류된다.

(9) 산림복합경영

사업내용은 목재 및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해 복합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이다. 산림복합 경영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에 대한 투자로 분류될 수 있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다.

(10)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지원

지원 대상자는 임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가공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이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칩 가공, 통나무 가공, 제재시설, 목각가공, 목질유기질비료 가공, 목재 방부시설, 목탄·목초액, 단기소득 임산물 가공 등 임산물 가공시설이고, 지원비율은 국고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이 사업의 성격상 산림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국내 산림을 적절히 관리,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며 「보조금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는 없다.

(11)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지원 대상자는 임산물 가공 공장을 하는 자로서 국산 임산물을 구입한 실적이 있는 자이다. 국산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데 지원비율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다. 이 사업도 국산목재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시켜 국내 임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SOC투자에 해당된다.

(12) 간별·소경재 활용장비지원

사업 내용은 국산재 생산비 절감 및 이용도 제고에 필요한 수집·운반·가공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밤생산자이며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의 생산과 활용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통보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임목생산·가공 지원' 사업도 지원 목적이 간벌·소경재 수집·운반·가공장비 지원 등에 따른 국산재 이용 촉진을 통해 국내 산림의 지속 가능한 육성에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며 통보의무가 없다.

(13)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은 단기소득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구입비 지원이고,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 경영체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20%, 자부담 40%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문의 적용을 받는 임산부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로 명시된 '유통 및 판매 촉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조금 협정」에 의한 통보의무가 없다.

(14) 합판 및 보드류 시설 지원

휠엽수 가공용 합판 생산시설을 침엽수 가공용 생산시설로 신설, 교체하는 경우 또는 노후된 보드류(PB, MDF등) 생산시설을 교체하

는 비용을 국고에서 70%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리우 선언에 호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에 필요한 열대림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재 가공시설을 침엽수 가공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므로 「보조금 협정」상의 허용보조인 환경보조금으로 분류되며 '특정성'이 있으므로 통보대상이다. 또한 지원은 일회에 한하며 전체 소요 금액의 2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 산림조합 육성

사업내용은 산림조합운영비를 보조 및 융자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지역의 146개 산림조합으로서 지원비율은 100% 보조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상 허용대상인 정부의 일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 또는 '지도 및 자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협정」에 의한 통보의무는 없다.

(16) 농림수산물물류센터

사업내용은 대규모 소비 지역에 대량 직거래가 가능한 종합 직거래 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지원이고,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내용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물류 장비 등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다. 취급 품목에 임산부산물이 포함되므로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에 속하는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17)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내용은 제2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시에 설치하는 것이고 여주 임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국산재 원료구입비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조합중앙회로서 지원내용은 제2 유통센터 설치는 목재 가공공장 등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설치비이고 여주 유통센터는 원료구입을 위한 국산재 구입비 지원이다. 지원비율은 제2 유통센터 설치는 국고보조 100%이고 여주 유통센터의 원료구입은 응자 80%, 자부담 20%이다. 이 사업은 WTO농업협정상 허용보조인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에 해당된다.

(18) 임산물 직거래사업

사업내용은 밤·표고·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집중출하기에 수집·저장한 후 비출하기에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다.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직거래 판매장을 대도시(광역시 이상)에 설치하여 산지임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단기소득임산물 수집은 산림조합이고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은 임산물 생산·가공법인이다. 지원비율은 단기소득 임산물 수집은 응자 80%, 자부담 20%이고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은 응자 100%이다. 원료구입비 및 운영비는 응자 80%, 자부담 20%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 협정상 허용된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에 해당하며 통보대상 보조가 아니다.

(19)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

사업내용은 야생화, 조경수 등과 같은 관상

자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고, 지원대상자는 대한민국자생란협회, 조경수협회, 분재조합 등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관상자원 관련 법인, 전문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이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 등 '특정성'이 있어 「보조금 협정」상 상계조치 가능보조로서 통보대상으로 분류된다.

(20)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내용은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규격 출하하는 포장 자재비와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비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이고, 지원비율은 임산물표준출하는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이고 포장디자인 개선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용자 20%, 자부담 40%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 협정상 허용 대상인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로서 허용보조에 해당된다.

(21) 임산물 유통정보화

이 사업의 내용은 임산물에 관한 생산·가격 정보를 DB화하여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들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여 정보획득 및 임산물 판로확보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유통정보 시스템은 산림조합중앙회이고, 임업

인 홈페이지구축은 신지식인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100%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을 위한 보조의 전형적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22)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 대상자는 임산물 수출업체이고 우수임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포장·운송비, 포장기계·장비구입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임산물 선별기 구입비, 임산물 운송차량 구입비, 수출촉진 검역비를 지원하고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을 위해 수출홍보물 제작, 시장개척단 파견 등에 대한 지원이며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지원비율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에 따른 개도국 우대 조항에 의거한 감축면제 수출보조에 해당하여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23)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

이 사업은 주산지 중심, 전략 품목의 생산자조직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 경영체)이고 지원비율은 국고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지원대상 품목과 사업 종류는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수매·출하조절, 산지유통·생산시설 및 장비 구입비이다. 이 사

업은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인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24)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이고 지원내용은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및 장비구입이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인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2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임업경영 기반을 갖추고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독립가로 선정하고, 젊고 유능한 임업인을 후계자로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선도 할 핵심주체로 양성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업후계자, 독립가이고 지원비율은 융자 100%이다.

지원내용은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자재 구입비, 임야매입자금 등이다. 이 사업은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항목으로 보조금의 "수혜 기준 및 금액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으로 명확히 설정되고 그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혜자격이 부여되며 이러한 조건과 기준이 엄격히 준수"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b)에

의거 '특정성'이 없는 보조에 해당하여 허용보조(상계조치 불능보조)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통보의무도 없다.

(26) 임업전문인력 양성

사업내용은 산림경영계획,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산림경영관리자의 육성이고, 지원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기능인 훈련원의 임업기능인 및 산림경영 관리자 교육훈련비 지원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임업기계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100%이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인 '교육훈련' 보조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조금 협정」에 따른 통보대상이 아니다.

(27) 영림단 장비지원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능인 영림단이고 사업내용은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특정성'이 없으므로 허용보조로 분류된다.

(28) 임업기술지도

국내외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를 보급하여 대리 경영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업기술 지도원의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 임업기술지도장비 제공, 임업기술 정보지 제공이다. 지원비율은 임업기

술지도원 인건비는 국고 80%, 자부담 20%이고, 지도장비 및 산림지 제공은 국고 70%, 자부담 30%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산림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급시키는 데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구분되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보대상이 아니다.

(29)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목적은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는 휴양림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다. 지원조건은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고, 삼림욕장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이며, 산림박물관, 수목원, 생태숲 조성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이다.

이 사업의 성격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편익을 사회 일반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다.

(30) 산촌종합개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는 개발대상 산촌지역의 주민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인 산촌

을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협정」상 허용 보조로 분류되는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보조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성」이 있으므로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31) 해외조림사업

국내 목재 수요의 장기적, 안정적 목재 공급 원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100% 이내에 대한 융자이다. 이 사업은 천연림 벌채를 보완하기 위한 해외 조림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유용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지구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보의무가 없다.

(32) 조림

사업내용은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는데 대한 지원으로서 지원비율은 경제수 조림은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경관조림은 국비 50%, 지방비 50%, 유실수(밤나무)조림은 묘목대 100%, 고성산불 피해복구조림은 보조 100% 등이다. 한편 융자는 자력사업은 소요사업비의 100% 까지 융자하고 보조사업은 산주자 부담액의 100% 까지 융자한다. 이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인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보조금 협정」 제1 조 1항 (a) 3)에 의한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3) 육림

사업내용은 우량용재를 생산하는 기반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하는데 대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육림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들이다. 지원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고 융자는 자력사업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100%까지 융자하고 보조사업은 산주자부담액의 100% 까지 융자한다. 이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인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묘목생산

사업내용은 장기조림 계획에 소요되는 묘목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대한 지원으로서 지원비율은 묘목생산비의 60%를 융자한다. 이 사업도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다.

(35) 산림생태 보전

사업내용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와 전통 숲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들이며 지원조건은 외과수술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70%이고 주변정비는 국고보조 30%, 지방비 70%이다. 이 사업은 국민에게 사회간접자본인 산림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어 보조금이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다.

〈표 4-4〉 2001년 임업보조금 종류별 유형 분류

보조금(사업)종류	유형		비 고	2001 예산
	분류	통보		
임업기계정비구입 지원	통보대상	감축·유통	특정성 있는 보조금	용자714, 자부담214 4%(3년 거치 7년 상환)
임업기계장비센터 설치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 435
영림계획	허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405 지방비405
사유림 협업경영	허용보조	제외예산	농업협정상 지도 및 자문이나 유통 및 판매 촉진. 산림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1,353 지방비288 자부담575
임도시설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30,229 용자5,027 지방비24.183 자부담5,706
사방사업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고22,066 지방비 8,445
단기소득임산물생산	허용보조	허용-직불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 촉진	보조7,414 용자22,274 지방비6,315 자부담 16,838
조경수·분재소재생산	통보대상	허용-개도	특정성 있음	용자 14,308 자부담 6,132 연리 5% 3년거치7년 상환
산림복합경영	허용	허용-개도	지속 가능한 임업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436 용자654 지방비436 자부담654 연리5% 3년거치7년 상환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허용	허용-직불	SOC 투자로 분류	용자9,426 자부담2,357
국산임산물구입자금지원	허용		SOC 투자로 분류	용자13,487. 자부담3,984
간벌소경재활용장비지원	허용	제외예산	SOC 투자로 분류	보조1,470 자부담300
임산물자동포장기 및 박과기지원	허용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 촉진	보조26 용자26 지방비26 자부담52
합판·보드류 시설지원	허용	제외예산	SCM상 환경보조금(남양제 가공 시설을 침엽 수 가공 시설로 개체하기 위한 자금 지원)	용자2,000 자부담857 연리7.5% 10년(3년거치7년상환)
산림조합육성	허용보조		농업협정상 교육훈련, 지도 및 자문	보조705 용자14,400 지방비705
농림수산물물류센터	허용보조	허용-일반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	보조600 지방비251
임산물종합유통센타	허용보조	제외예산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	보조5,856 용자2,443
임산물직거래사업	허용보조	허용-직불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	지방비5,750 자부담750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	통보대상	제외예산	특정성 있는 보조	보조1,800 지방비720 자부담1,080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허용보조	허용-직불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	보조440 용자20 자부담1,300
임산물 유통정보화	허용보조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	보조687
임산물 수출촉진	허용보조	감축·유통	농업협정상 개도국 우대	보조2,997 용자2,800 자부담3,882
임산물 생산자조직육성	허용보조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용자51,480 자부담42,450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허용보조	허용-직불	농업협정상 유통 및 판매촉진	보조2,525 용자2,525 지방비2,525 자부담5,05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	허용보조	허용-직불	특정성 없는 보조	용자13,500
임업전문인력양성	허용보조	제외예산	농업협정상 교육훈련	보조2,142
영림단 장비지원	허용보조		특정성 없음	보조566
임업기술지도	허용보조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5,984 자부담1,572
산림휴양공간조성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18,844 용자1,680 지방비16,082 자부담720
산촌종합개발	허용보조	허용-직불	SCM상 낙후지역개발	보조13,387 용자7,040 자부담5,280
해외조림사업	허용보조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용자12,225
조림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49,238 용자2,071 지방비26,536 자부담2,924
육림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21,559 용자1,673 지방비21,559 자부담9,107
묘목생산	허용	허용-개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용자3,170 자부담2,113
산림생태보전	허용	제외예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조240 지방비560

주 : SCM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임.

(다음호에 계속)